

[별지서식 제19호] (제11조 관련)<개정 2014. 7.10, 2014.10.16., 2019. 3.27, 2021. 3.12, 2021. 9. 16.><개폐정리 2015. 6.30, 2015.11.19., 2018. 3.26, 2020. 8.28, 2023. 1.27.>

감 사 역	담 당	과 장	팀 장	실양업부사장

주택사업금융보증채무약정서

보증신청인NO : _____

상 호 : _____

약정기간 : 년 월 일 ~ 년 월 일

190mm×268mm 인쇄용지(특급) 70g/m²

주택사업금융보증채무약정서

약정인은 귀 공사로부터 _____ 소재 대지상 공동주택건설사업(이하“대상사업”이라 한다)과 관련하여 귀 공사의 규정이 정하는 주택사업금융보증을 받은 때에는 그에 관한 귀 공사에 대한 채무를 다음의 각조항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겠으며, 연대보증인은 약정인의 의무이행 및 채무를 귀 공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약정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할 것을 확약함.

약 정 인	주 소			
	상 호			
	대표자 (인)		대표자 (인)	
	주 소			
	상 호			
	대표자 (인)		대표자 (인)	
연 대 보 증 인	주 소		주 소	
	성 명 (인)		성 명 (인)	
	책임분담비율 (제14조제2항관련)	%	책임분담비율 (제14조제2항관련)	%
	주 소			
	상 호		대표자 (인)	

제1조 보증한도액

약정인이 대상사업과 관련하여 귀 공사로부터 보증을 받을 수 있는 보증의 한도액은
금 _____ 원으로 함.

제2조 약정유효기간

이 약정서의 유효기간은 _____ 년 월 일부터 _____ 년 월 일 사이에 발급받은 보증서의 보증기간까지로 함. 다만, 발급받은 보증서의 보증기간이 경과할지라도 그에 관하여 약정인이 부담하여야 할 의무가 종료되지 않았을 때에는 그 의무가 종료될 때까지 이 약정서상의 책임이 계속 유효한 것으로 함.

제3조 보증신청 및 발급

귀 공사의 보증서는 약정인의 신청에 의하여 제1조의 한도액 범위내에서 일회 또는 수회로 분할하여 발급받기로 함.

제4조 의무이행

귀 공사로부터 보증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약정인(2인 이상일 경우에는 실제 비율에 의한 금액에 불구하고 귀 공사에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하겠음)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제반의무, 관계법령 등에 의한 의무 및 이 약정서상의 의무를 다하여 귀 공사에는 조금도 손해를 끼치지 아니하겠음.

제5조 담보제공

- ① 약정인 및 연대보증인은 각기 귀 공사 소정의 담보를 제공할것음.
- ② 귀 공사에 대하여 약정인 및 연대보증인이 이미 제공하였거나 앞으로 제공하는 모든 담보는 그 담보하는 채무외에 이 약정서에 의하여 귀 공사로부터 보증받는데 따르는 약정인의 채무에 대하여 공통으로 담보하는 것으로 함.
- ③ 제2항의 담보중 액면금액등을 기재하지 아니한 백지당좌수표를 귀 공사에 담보로 제공한 때에는 귀 공사에 대한 채무에 따라 액면금액란등을 보충할 권리를 귀 공사에 부여하겠음.

제6조 보증료등

- ① 귀 공사로부터 보증을 받는 때에는 귀 공사의 소정요율 및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정된 보증료 및 기타 관리수수료등 귀 공사 내규에 의한 제수수료를 동시에 납부하겠음.
- ② 귀 공사의 보증책임기간이 연장될 경우에는 그에 대한 제1항의 보증료 및 관리수수료 등을 추가로 납부하겠음.
- ③ 약정인의 요청 또는 귀책사유로 보증료 환불이 유보된 경우 약정인은 미환불보증료에 대한 지연배상금을 요구하지 않겠음.

제7조 통지의무

- ① 약정인이 보증채권자 또는 제3자로부터 귀 공사가 보증한 사항에 관련되는 의무이행청구를 받거나 보증채권자와 약정인 사이에 계약의 변경 또는 해약등 이 약정에 영향을 미칠 사유가 발생된 때 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귀 공사에 통지하겠음.
- ② 제1항의 통지를 게을리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약정인이 그 책임을 지겠음.

제8조 면책사항

- ① 약정서 기타 보증절차에 필요한 문서에 사용한 인장이 귀 공사에 신고된 인감과 대조하여 이를 보통의 주의로써 동일한 것으로 인정하고 취급한 때에는 인장의 도용·위조 기타 사고가 있을 경우라도 이 약정은 유효한 것으로 하고 이 약정서상의 책임을 지겠음.
- ② 이 약정서 기타 보증절차에 필요하여 약정인이 제출한 서류를 귀 공사가 보통의 주의로써 취급한 때에는 추후 그 서류에 위조·변조 기타 사고가 있음이 발견되더라도 이 약정은 유효한 것으로 하고 이 약정서상의 책임을 지겠음.

제9조 배 상

- ① 귀 공사가 보증한 금액을 보증채권자에게 납입한 때에는 그 납입금을 지체없이 귀 공사에 배상하겠음.
- ② 제1항의 납입금에 대하여는 그 보증금의 납입일부터 귀 공사 소정의 지연배상금을 납부하겠음.

제10조 부대채무

귀 공사에서 지급한 채당금, 가지급한 법적 절차비 및 소송비용등 모든 부대채무에 대하여도 귀 공사소정의 손해금을 가산하여 즉시 변상하겠음.

제11조 사전구상

약정인 또는 연대보증인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, 귀 공사가 보증한 금액에 대하여 통지 또는 최고없이 당연히 사전상환채무를 부담하여 이를 지체없이 변상하겠으며, 귀 공사가 미리 구상권을 행사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겠음.

1. 귀 공사가 정하는 보증의 금지 또는 제한사유가 발생한 때
2. 귀 공사에 대한 이 약정 또는 각종 약정상의 의무나 보증채권자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귀 공사가 인정할 때
3. 귀 공사의 채권이 침해당하거나 침해당할 우려가 있다고 귀 공사가 인정할 때

제12조 변제충당

① 약정인이 이 약정서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귀 공사가 사전의 통지와 제반 절차를 생략하고 약정인과 연대보증인이 귀 공사에 담보로 제공한 제담보물을 언제든지 임의처분하여 귀 공사 채권 및 제부대채무의 변제에 충당하여도 이의가 없으며, 만일 부족이 있을 때에는 즉시 추가로 변상하겠음.

② 제1항의 변제충당순서와 방법은 귀 공사의 내규로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함.

제13조 신고사항의 변경

① 인장·상호·대표자·주소 기타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즉시 서면으로 이를 신고하겠음.

② 제1항의 통지를 게을리 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약정인 및 연대보증인이 그 책임을 지겠음.

제14조 연대보증인의 책임

① 연대보증인은 이 약정서에 의하여 거래하는 보증신청서등의 서류에 연대보증인의 기명날인 없이도 기명날인한 것으로 보고 그 거래에 관한 이의 제기를 하지 않겠으며, 이 약정서에 의하여 부담하는 모든 채무에 대하여도 약정인과 연대하여 그 이행의 책임을 지겠음.

② 공동시행자 상호 간에 연대책임을 부담하는 경우로서 시행자의 경영실권자, 최다주식보유자 또는 대표자(이하 경영실권자등이라 한다)인 사유로 개인연대입보하는 자는 이 약정서에서 정한 그 시행자의 시행비율로 분담(이하 책임분담비율이라 한다)하여 연대입보책임을 부담하겠으며, 책임분담비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행자 간의 시행비율이 균등한 것으로 보아 연대입보책임을 부담하겠음

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경영실권자등이 아닌 연대보증인은 약정인의 신청에 의하여 귀 공사가 보증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책임을 지겠음

제15조 주택법등

① 약정인과 연대보증인은 이 약정서에서 정한 사항외에 주택법·동시행령·동시행규칙, 주택공급에관한규칙, 임대주택법·동시행령·동시행규칙,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·동시행령·동시행규칙, 건축법·동시행령·동시행규칙과 귀 공사의 정관 및 제규정을 준수하겠음.

② 제1항의 법령과 귀 공사의 정관 및 제규정이 개정될 때에는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이에 의하여 이 약정서의 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함.

③ 이 약정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귀 공사의 내규 및 주택사업금융대출을 위한 주택사업금융약정서를 적용하기로 함.

제16조 합의관할

이 약정서에 따른 거래에 관한 소송은 귀 공사의 본점 또는 영업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함.

약정인 및 연대보증인은 이 약정서의 위 각조항과 별도 수령한 보증약관 내용에 관한 설명을 듣고 충분히 이해하고 서명날인하여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
주택도시보증공사 귀중

보증발급 및 사후관리를 위한 개인(신용)정보의 수집·이용·제공·조회동의서

귀 공사와의 (보증)채무약정, 채권관리 등 (금융)거래와 관련하여 귀 회사가 본인(개인인 약정인, 피보증인, 연대보증인 등)의 개인(신용)정보를 수집·이용·제공·조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15조 제1항 제1호, 제17조 제1항 제1호, 제23조 제1호, 제24조 제1항 제1호,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3조, 제24조, 제32조 내지 제34조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. 이에 본인은 귀 회사가 아래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인(신용)정보를 수집·이용·제공·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1. 수집·이용에 관한 사항	
수집·이용 목적	☐ (보증)채무약정 등 (금융)거래관계의 설정 여부 판단 ☐ (보증)채무약정 등 (금융)거래관계의 설정·유지·이행·관리 ☐ 채권관리, 금융사고 조사, 분쟁해결, 민원처리 ☐ 보증 발급 및 보증료 납부(환불) 안내 ☐ 법령상 의무이행 등
수 집·이 용 할 항 목	☐ 개인식별정보 :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, 주소, 전화번호 등 연락처 ☐ 신용거래정보: 개인대출현황 및 보증채무현황, 신용카드 한도 및 이용 정보 등과 이에 따른 실적을 포함한 거래내용 ☐ 신용평가를 위한 정보 - 신용능력정보: 재산·채무·소득의 총액, 납세실적 등 - 신용도판단정보 : 연체, 대위변제, 대지급, 부도, 공공정보, 신용등급, 신용평점정보, 다른기관의 신용정보 조회 기록 등 ☐ 본인 부당산현황, 직장·고용·급여(소득)정보, 과세정보(사업자등록증명원, 국세납세증명서, 납세사실증명원, 폐업사실증명원 등), 출입국기록정보(여권정보, 출입국일자, 출국목적, 행선국(출국지역) 등), 재외국민등록정보(체류국가, 주소지, 연락처, 등록일자 등) 등기·등록 등에 의하여 권리관계가 공식되는 재산권, 골프회원권 등 ☐ 기타 금융거래의 설정·유지·이행·관리를 위한 상담, 채권관리 등을 통해 생성되는 정보 및 신용도 판단에 필요한 정보 ※ 본 동의 이전에 발생한 개인(신용)정보도 포함됩니다.
보유·이용기간	귀하의 개인(신용)정보는 수집·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보증상담 신청시까지 또는 상담이후 보증약정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(보증채무)약정 등 거래관계 종료시점까지(보증 및 계약의 갱신 등으로 변경되는 경우 포함) 보유·이용됩니다. 단, 신용정보 보유·이용기간 종료 후에는 금융사고 조사, 분쟁 해결, 민원처리 및 법령상 의무이행만을 위하여 보유·이용됩니다.
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	위 개인(신용)정보 중 필수적 정보의 수집·이용에 관한 동의는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,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(금융)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가능합니다. 위 개인(신용)정보 중 선택적 정보의 수집·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,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금융거래 조건 등에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2. 제공·조회에 관한 사항	
제공·조회 대상기관	신용정보집중기관(한국신용정보원 등), 신용조회회사(코리아크레딧뷰로(주), NICE신용평가정보(주), 한국평가데이터(주) 등)
제공·조회의 목적	법인의 (보증)채무약정에 따른 대표자, 경영실권자, 과점주주 등의 상거래 관계 설정 및 유지 여부판단, 신용 관련 통계모형 개발 및 분석, 신용도 판단, 기타 신용정보 조회가 필요한 업무 등
제공·조회할 개인(신용)정보의 항목	[신용정보 집중기관 또는 신용조회회사에 제공·조회 하는 사항] ☐ 개인식별정보: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, 주소, 전화번호 등 연락처 ☐ 신용거래정보: 개인대출현황 및 보증채무현황, 신용카드 한도 및 이용 정보 등과 이에 따른 실적을 포함한 거래내용 ☐ 신용평가를 위한 정보 - 신용능력정보: 재산·채무·소득의 총액, 납세실적 등 - 신용도판단정보 : 연체, 대위변제, 대지급, 부도, 공공정보, 신용등급, 신용평점정보, 다른기관의 신용정보 조회 기록 등 ☐ 기타 금융거래의 설정·유지·이행·관리를 위한 상담, 채권관리 등을 통해 생성되는 정보 및 신용도 판단에 필요한 정보 ※ 위 정보를 조회하기 위하여 조회대상기관에게 제공되는 귀하의 개인(신용)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. ☞ 개인(신용)정보: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, 주소, 전화번호 등 연락처 ※본 동의 이전에 발생한 개인(신용)정보도 포함됩니다.
제공·조회기간	귀하의 개인(신용)정보는 제공·조회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보증상담 신청시까지 또는 상담이후 보증약정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(보증채무)약정 등 거래관계 종료시점까지(보증 및 계약의 갱신 등으로 변경되는 경우 포함) 제공·조회됩니다.
제공·조회 동意的 효력 기간	본 동의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본인 또는 관련기업이 신청한 신용평가 효력과 법인의 (보증)채무약정에 관계된 동의자 개인의 (보증채무)약정 종료 시점까지(계약의 갱신 등으로 변경되는 경우 포함) 유효합니다.
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	위 개인(신용)정보의 제공·조회에 관한 동의는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,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(금융)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가능합니다.

위 개인(신용)정보 수집·이용·제공·조회 관한 동의

본인은 본 동의서의 내용을 이해하였으며, 개인(신용)정보 수집·이용·제공·조회에 관한 고액권리안내문에 대해 자세히 설명 듣고 수령하였습니다. 또한, 본 동의서는 본인이 관계자 (대표자, 경영실권자 등)인 다른 회사가 귀 회사와 거래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효력이 있음을 확인합니다.

구 분		내 용	동 의 자 (본인)	
수집·이용 동 의	귀 회사가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(신용)정보를 수집·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	(동의함 ☐ 동의하지 않음 ☐	본 인 성 명	(서명)
제공·조회 동 의	귀 회사가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(신용)정보를 제공·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	(동의함 ☐ 동의하지 않음 ☐		
고유식별정보 동 의	귀 회사가 위와 같이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수집·이용·제공·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	(동의함 ☐ 동의하지 않음 ☐		
수집·이용 동 의	귀 회사가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(신용)정보를 수집·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	(동의함 ☐ 동의하지 않음 ☐	연 대 보증인 성 명	(서명)
제공·조회 동 의	귀 회사가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(신용)정보를 제공·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	(동의함 ☐ 동의하지 않음 ☐		
고유식별정보 동 의	귀 회사가 위와 같이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수집·이용·제공·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	(동의함 ☐ 동의하지 않음 ☐		

○ **공사는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26조(고유식별정보의 처리) 및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에 따라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.**

○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에 따라 당사가 신용조회회사를 통하여 귀하의 신용정보를 조회한 기록은 타 금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, 이에 따라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